통 권

경 영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人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型型水水型 eAnSe.com 場場 self sold can extend the

된다한

2024/12/25 통권 1707호







2025년 稅計財經 Diary 세무·회계·제무·경영수절

Ⅰ.세금신고납부핵심사항

- ≥ 2025년 세무·회계달력 / 1
- ▶ 2025년 세무일지(12개월의 신고납부일) / 13
- ▶ 법정 4대보험의 개요 및 보험료 부담 계산·납부 방법 / 17

Ⅲ.세무환율정보

▶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48

서울본사(영등포) 829-7557

서초강남본부 02-829-7535, 7560 (서초구 양재동)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서초구 서초동)

가산디지털분실 02-6011-5514 강남지점 516-4199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서초지점 6245-7502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삼성동지점 571-3700 여의도지점 6959-2378 부산지점 051-819-3308 051-714-7227 센트럴지점 2209-0710 부산중앙지점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영등포지점 2633-9243 경인지점 032-815-2641 가산지점 2026-8838 312-2255 일산지점 031-817-4189 중소기업지원센터 송도지점 032-715-5376 울산지점 052-263-7006

즉시제안과 업무 가능성 답변 010-2672-2250

Ⅱ.2025년시행중요세법핵심사항요약

- ▶ 법인세법 개요 / 18
- ▶ 부가가치세법 개요 / 22
- ▶소득세법 개요 / 27
-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 3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 40
- ▶지방세법 개요 / 43

<u>안세회계법인 Private accounting 829-7575</u>

- 경리·세무·회계·재무·경영·재경 outsourcing
- 상장기업·대기업의 PA와 K-IFRS 재무제표 작성 XBRL
- 회계감사·세무조정·IFRS, 기업가치향상자문, ESG
- 경영자문·장부기장·4대보험자문, 경리총무외주화
- 주식평가·납세신고·정밀실사감사. 기업가치평가
- 인수합병Deal·조세불복·기업구조조정, 청산증자
- 세무예비실사 등 조세자문·전략수립, 세무진단
- 중견기업경영권 상속승계와 증여, 창업오너자문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Particular Season Seaso	Van State of the S	E SATURDAY	4	11 #17 #18	18	25	TA No Substitution To Substit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A 코너 · 세무·희계·재경동영상강의	금 FRIDAY	E .	10 발안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정수분 납부 주의세(공원원) 자전시고남 미자세(지반교육사동특세 포함) 신고남부 특별장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농특세 포함) 자전신고남부	17	24	31 증함소득세 중간에남분 분납기한 양말을 결산되한 밤인새분 지방소득세 남부 가별소나세(마) 등 인진내분 지 교통세(교육씨주행씨 포함) 신고당부 주세(교육씨주행씨 포함) 신고당부 우왕근로스득 지담명체서 제출 20)지금명체서 제출
ing	◆회계·세무·제무·경리 포괄외주화 ◆회계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자문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장사 파견사업(재경고문)	목 THURSDAY	2	6	16	23	30
전국지점망 Accounting	리 차 리]			1 신정	&	15	22	29 설날 음1.1
안세회계법인의 전국	사을 829-7557, 7575[차 강남 516-4199, 서초 6245 삼성 571-3700, 여의도 6956 선택을 2209-0710, 영등포 266 가사 2026-8838 가난지되릴 6	부산경남 6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61-810-3308 박산왕6 61-74-7227 부산번텀 051-938-9577, 정인 032-815-2841 일산 031-817-4189, 속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화 TUESDAY			14 8 12.15	21	28
		JAN	월 MONDAY	2 FEB 202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9	13	20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교납부	27 부가자세 제27분 확정신교납부 개발소비세 부분기 신교답부
0운소신 기업기치합사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지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5	일 SUNDAY	12 DEC 2024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소만	12	19	56

Accounting	◆회계·세무·재무·경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서울 829-7557, 7575[처리처리]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	이것エG, 기법기시영G, 중요년6시시간 027-73/3 절세전략거인와 경영자무 統利處理 는 세무박사

	HEB
G	V
	2025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A BANK CONTROL OF THE PARTY OF
www.eAnSe.com	세무·호계 30분내 Q&A 코너 · 세무·호계·재경동영상강의
Accounting outsourcing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의주화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사을 829-7557, 7575[차리차리] 김남 516-4199, 서초 6245-7502 김남 51-370, 여의도 6992-2378 센트월 2209-0710, 영목도 2633-9243 가산 2020-883 가난타지털 6011-5514 부산경남 051-322-827 대전출청 042-525-558 부산 051-819-3308, 부산출청 051-714-7227 부산체턴 051-819-3308, 부산출청 051-714-7227 부산체턴 051-819-3408, 축도 032-715-5376 일산 031-817-4189, 축도 032-715-5376

	E SATURDAY	1	œ	15	25	IF Name of All Na
30도비 Q&A 코너 ·세무·희계·재경동영상강의	금 FRIDAY		7	14	21	28 음2.1 6월말 결산법이 반에 중간에남 개렴소비세(유류, 등) 신교남부 교육세(금융보험업위) 제4기분 신교남부 교통세(교육사 폭행 시고남부 의용-로스트, 지문에서 제출
(i _ ⁽)	목 THURSDAY		9	13	20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교남부	22
• • I	今 WEDNESDAY		5	12 정월대보름 음1.15	19	56
지는을 2.029-07/0, 856호 4.023-9243, 7년 2026-8838, 7년C/지털 6011-5514 부산 051-818-3302,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051-818-3302, 박산동양 051-74-7227 부산센텀 051-938-95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속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화 TUESDAY		4	11		25 무가져세 제27분 활급
	월 MONDAY	3 MAR 2 0255 S M T W T F S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 243 25 26 27 28 29	₩	100 임인소는세 원천정수분 남부 우민세종업원원 신고급부 개인사업자 사명장 현황신고 레카세(지방교육체 포함) 신고납부 대륙메일처림계산에 함께 제출미감일 특별장수 지방소득체 남부	17	24
2025	일 SUNDAY	S M T W T F S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6	16	23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E SATURDAY	&	15	22	53
www.eAnSe.com 세무·희계 30분내 Q& A 크너 에무·희계·재경동영상강의	금 FRIDAY		14 = 2.15	21	58
ing 자꾸 55 50	목 THURSDAY	9	13	20 춘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남부	23
지본당 수 회계·세무·제무·경비 포괄의수화 가능52 수 회계·세무·제무·경비 포괄의수화 가능52 수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 등 3-924 등 1-714-722	♦ WEDNESDAY	又 成 成	12	19	56
4 등 829-757, 7575[처리처리] 사물 829-757, 7575[처리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성점 571-3700, 여의도 6892-2378 센트월 2209-0710, 영号도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대지별 6011-5514 부산캠남 651-322-833 가산대지별 6011-5514 부산캠남 651-322-833 가산대지별 6011-5514 부산레임 561-338, 부산동일 651-714-7227 부산벤팀 651-938-9677, 경인 032-815-2841 일산 031-817-4189 李도 032-715-5376 일산 052-263-7006	화 TUESDAY 안 세	ਗੁਅ <u>ਬ</u> ਾਪੁ 4	11	18	25
	8 MONDAY SO25 S M T W T F S S R 7 R 9 1 1 2 1 2 2 2 2 2 2 2 2 2 2 3 2 3 3 3 3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27 28 29 30 대체휴일	10 방안소득세(동특세 포함) 원천장수분 납부 주민세(중인원)당 (시대남국 레자((한교육사동특세 포함) 신고남부 특별장수 (지방소득세 포함) 신고남부 증권증구액세 신고대부	지금맹세서(근로소득분) 제출	24 (유민의 법인세 시끄남부 등 (유민한 법인세 시끄남부 등 (유민한 법인 기료 포함)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육세대교육사주행세 포함 (유민준 지급명세서 지출 일은근로스독 지급명세서 제출 기계
아웃소실, 기업가서향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2025MAR	M T K	. 12 13 19 20 5 26 27	6	16	23

		안세회계법인의 전국	전 로 시절망 Accounting	Accounting outsourcing www	www.eAnSe.com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天소승, 기업/지영상, 경영권승계사문 829~/5/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지문 稅利處理 는 세무박사		서울 829-7557, 7575[처리처리] 김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여의도 6959-2378 센트릴 2209-0710, 영등표 2833-9343	(대보지리) ◆회계·세무·제무·경리 포괄외주회 57502 ◆회계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 52.2378 ◆체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 33-9243,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세무·회계 30분내	The state of the s
2025	APR	가で 2.02~883.7 (자리사회 보이 10~50.4 부산정부 061~322~833.7 대전총정 042~55~5568 부산 061~819~330, 부산품정 061-74-7227 부산생된 06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총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	(i - H	Q&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TOTAL STATE OF THE PARTY OF THE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E SATURDAY
		1	2	m	4 장명	5 식목일/한식
9	7	&	6	10 밥안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장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왕당 시대답부 레저세(지방교육사동특세 포함) 신고남부 특별정수 지방소득세 남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남부	11	12 =3.15
13	14	15	16	17	18	19
아다	2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2	23	24	25 부가가 제 제기분 예정신고남부 개별소비세 1분기 신고남부	26
27	28 음4.1	59	30 12월말 결산법이 법인씨분 지방소득세, 개출소비제(유류 등) 신교납부 교통세교육사주형세 표함 신교남부 구세교육세 포함 신교남부 일왕근로소득 지금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체서 제출	OF AII	3 MAR V T F S M T N 1 F S M T N 1 F S M T N 1 F S M T N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M 1	2025 5 MAY 2025 F S M T W T F S 1 1 1 2 3 1 2 3 7 8 4 5 6 7 8 9 10 21 22 13 14 15 16 17 16 17 21 22 18 19 20 21 22 23 24 28 29 25 26 27 28 29 30 31

0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A 크너 아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Accounting outsourcing	◆회계·세무·제무·경리 포괄외주화 ◆회계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자문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사을 829-7557, 7575[차리차리] 2남 516-4199, 서호 6245-7502 삼절 571-2700, 여익도 6859-2378 세트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206-8833, 산년지열 6011-5514 부산업당 651-322-8321 대전물성 025-255-558 부산 651-819-3308, 부산품양 051-714-7227 부산센턴 651-938-9677, 정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혹은 032-715-5376 물산 052-265-7006

	E SATURDAY	£	10	17	54	31
WWW.eAmbe.com	금 FRIDAY	2	6	16	23	30
Accounting oursourcing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재경건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DAY \ \ \ \ \ \ \ \ \ \ \ \ \ \ \ \ \ \ \	1 근로자의날	튀아바 8	15 스승의날	22	53
ACCC (ACLACE) キョル ACF-762 キョル ACF-762 キョル ACF-7627 キョル ACF-7625 キョル ACF-7625 キョル ACF-7627 +	→ WEDNESDAY			14	21 ∞₽	88
사물 829-7557, 7575[처리처리] 사물 829-7557, 7575[처리처리] 강함 16.4169, 42k 6245-7502 삼성 571-3700, 여의도 6959-2378 산별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02-8837 비전동형 0401-5514 부산생님 051-322-8837 대전동형 042-525-5568 부산에 051-382-8337 대전동형 042-525-5568 부산에 051-382-837 대전동형 042-525-5568 부산에 051-382-837 대전동형 042-525-5568 부산에 051-382-837 대전동향이 201-527	화 TUESDAY	iodkre	6 대체 휴일	13	20 담배스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남부	27 95.1
	월 MONDAY	Link 2025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입하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2 음4.15 법안소득세,동특세 포함) 원천3수분 납부 주민세(중업원) 시고맙는 레자세(지방교육체·동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정수 지방소특세 답부 증권증거래세 신고납부	19	92
이웃소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2025 MAY	일 SUNDAY	4 APR 202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25 26 22 26 25 26 27 28 29 30 <td< td=""><td>4</td><td>11</td><td>18</td><td>52</td></td<>	4	11	18	52

이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統利處理 는 세무박사	간세의 세 달	11~000 중대	기 670 로 이	7H-F E16
	이유소시 기억가다 하사 겨여권스계1대 870-7575	시스 나이, 기담기시아이, 이어만이 빠지면 UZ/ 1979	사고자라 2010년 1921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4	
	25

7/2	1 2 2 2
	서울 829-7557, 75751서
	516-4199, 서초 (
	571-3700, 0
	센트럴 2209-0710, 영등포 263(
	7산 2026-8838. 기산디지털 60
	КЮ
	50
	부산센텀 051-938-9677, 경인 032
	일산 031-817-4189, 송도 032-7
	SAL 050, 250 JOS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PERSONAL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T	Marketick Mark	SION SION	PANTO BANGARA SERVICE
www.eAnSe.com	서무·회계	30년내	Q&A 코너	·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Accounting outsourcing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회계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자문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벽 기어바무교육호려 및 과리	기급 6 분파 기급 6 전무강사 파격사업(권
게법인의 전국지점망	9-7557, 7575(ਸੇ ਧੁ ਸ਼ਧੀ)		-322-8321 대전축정 042-525-5558 119-3308, 부산중앙 051-714-7227 31-038-0677 정이 032-815-2641	30c 3kg

		ш			-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今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E SATURDAY
1	2	8	4	5 망종	6 현충일	_
	9월말 결산합인 법인세 중간에比, 소득세 확 정신고남부(소독세부 기원산독세 시기당부 포함), 교회세(공은보험업원 분세 필 소타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제주원세 포 함), 주세(교육세 포함) 시고당부 인용근로독시급명세 포함) 시고당부 간인지금명체서 제출					
8		10 음5.15 법안소득세(동특세 포함) 원천장수분 납부	11	12	13	14
		주민 세조업원위 시끄러부 비자세(지방교육체·토래 포함) 신고남부 특별자 기방소급에 납부 증권증거래세 신고남부				
15	16	17	18	19	20	21 하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행) 신고납부	
22	23	24	25 8 6.1	92	27	28
29	30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사주행세 포함), 주세(교육				7 JUL S M T W	OF A
	세 포함, 신고납부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1기분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 7 8 9 10 13 14 15 16 17 20 21 22 23 24	
	과 답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6 27 28 29	27 28 29 30 31	III NA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Anada	The state of the s	E SATURDAY	2	12	19	56	2025 B AUG 2025 F S M T W T F S 6 7 S M T W T F S 13 14 S S S S S S S S 20 21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A 코너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금 FRIDAY	4	1	18	25 부가자세 제기분 확정신교납부 개별소비세 2분기 신교납부	6 JUN S M T W T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9 30
Accounting outsourcing W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재경컨설탕자료와 주간·월간 등	· ·	목 THURSDAY	&	10 바인스득세(동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무선에(중인원)된 시끄러부 과저제(지반교육사(동특제 포함) 신고남부 특별장수 지방소득세 납부 포 증권등거래세 신고남부	17	24	3일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포함, 주제교육제 포함 신고분부 주인세 지원은 납위 지역자원(설세 우인세 지원은 납위 지역자원(설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 처리) ◆회계·세무·제무·경리 포괄외주화 502 \$338 ◆회계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자 -9243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1-5514	• 1	→ WEDNESDAY	5	6	16	23	30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시울 829-7557, 7575[처리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여명도 6959-2378 센트얼 2209-0710, 영동포 2633-9243, 7산 2026-8838, 가난디자털 6011-5514	부산점남 051-322-832기 대전총청 042-525-5558 부산 05-1819-3308, 박산홍안 67-174-7227 부산센텀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송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화 TUESDAY	-	&	15	22	53
아이스 사는 기억가 바람사는 걸여의 스케지마 620 기대		JUL	월 MONDAY		_	14	21 담배스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남부	28
) Y Y Y Y Y Y Y Y Y	이, 소프, 소마실, 기계용(3),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1)	2025	일 SUNDAY	(2) 세 회계법인	9	13	50	27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A SANCE CONTRACTOR OF THE PARTY	臣 SATURDAY	2	하급 6	16	23 차서 음7.1	30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A 코너 에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Y = FRIDAY	1	&	15 라 과	22	53
Accounting outsourcing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의주화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Y R THURSDAY		~	14	7	58
전국지점망 Accoun	((처리처리) 수회계·세구 265-2378 2633-923 8 6011-5514 9 042-525-5558 061-14-722 032-815-2841 32-715-5376 166 분야 전문	→ WEDNESDAY	7 0 3 c 0 0 c	9	13	20 담바스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남부	22
안세회계법인의 전	사울 829-7557, 7575[처리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성성 571-3700 여의도 6699-2378 센트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자팀 6011-5514 부산 651-822-8327 대전충청 042-525-5558 부산 651-819-3308, 보산물인 601-5514 무산배팅 651-938-9677, 경인 032-815-2841 일산 031-817-4189, 속도 032-715-5241 출산 052-263-7006	身 TUESDAY	9 SEP 202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	12	19	56
이은 소시 기업기다[하다 철업의 스케트를 626 7575		월 MONDAY	7 JUL 202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2 23 24 2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7 28 29 30 31 33 31 33 31 33 34 36 36 31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7 36 36 36 36 36 36 36 37 36 <td< th=""><th>4</th><th>## 1980 전 1980 전 1</th><th>18</th><th>25 부가가치세 제기분 환급(내국법인)</th></td<>	4	## 1980 전 1980 전 1	18	25 부가가치세 제기분 환급(내국법인)
0.0 4 kl 210471416541 .	2025 (일 SUNDAY	201人人間 変別階位	E	10	17	24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Annotation Section Sec	Annual Control of the	臣 SATURDAY	6 8 7.15	13	20	22	2025 F S 3 4 10 11 17 18 24 25 31
www.eAnSe.com	세무·회계 30분내	Q&A 코너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금 FRIDAY	5	12	19	56	10 OCT S M T W T 1 2 5 6 7 8 9 12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Accounting outsourcing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 (교	목 THURSDAY	4	11	18	25	8 AUG 2025 S M T W T F 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481 25 26 27 28 29 30
전국지점망 Accounting	* * *	· ` ◆ ′ I	← WEDNESDAY	m	10 받안스투제(논통제 포함) 완전징수분 납부 주민제(중임원)분 신고급부 대자세(지방교육씨·통제 포함) 신고남부 특별장수 지방소투제 납부 공권증거래세 신고남부	17	24	
안세회계법인의 전국/	사울 829-7557, 7575[차리차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상청 571-3700, 여익도 6659-2378 센트월 2209-0710, 858표 2833-9243, 가사 2008-8938 가사티지턴 6011-5514	부산점남 051-322-8321 대전충청 042-525-5568 부산 051-819-3308 보유왕 051-747-7227 부산센텀 051-938-9577, 경인 032-815-2841 일산 031-817-4189, 속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화 TUESDAY	2	6	16	23 추분	30 자산시(기방교육세 포함) 남부 (영말을 살산밥이 받안세 신교남부 기발소비세(유류) 함 신교남부 교통세교육사주행세 포함 신교남부 우용시교육사주행세 재활 신교남부 28 기로스를 지원형세서 제출
1971 000 DIT	629~75/3 세무박사	SEP	월 MONDAY	12월만 결산범인의 범인세 중간에남 교육세급용보험임분). 교통세교육세주행 세 포함 기계설하세(유류 등), 주세(교육세 포함) 신교남 주민세 균등본(자랑교육세 포함) 남부 일용근로스투, 지금열세서 제출	8	15	22 음8.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교남부	29
0.00 4.11 7.1971+1754; 2893-17-21	이 자고요, 기료기계명명, 88년년리시대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지문 稅利處理 는	2025	일 SUNDAY		구 파	14	21	82

이웃소싱, 기업가처향상,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



10 K	17 17 17 17	** Plubb COLUMN *					THE STATE OF THE S			
William Control	www.eAlibe.colli	지민, 미국		1	SOHE THOS		T < 0 C	コー くとろ		。세부·회계·재경농영상7일
~	Accounting oursourcing	◆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히레가시. 세민조저 재미점여기 <u>민</u>		◆재정컨설팅자료와 주가·월가 듯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 개명 기어바므교수하면 미 마리	▲ (1 리 / 미 / 마 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아내리게 표이 이 저그 기정마	간세외세터간의 전독시터증	서울 829-7557, 7575(처리처리)	강남 516-4199, 서초 6245-7502	삼성 571-3700, 여의도 6959-2378	센트럴 2209-0710, 영등포 2633-9243,	/산 ZUZ6-8838, /샨디시털 6U11-5514	라산경남 051-322-8321 대전종정 042-525-5558 11 6년 6년 6년 6년 11 8년 8년 8년 74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부산 USI-819-33U8, 부산중앙 USI-/14-/22/ 표산세터 OE1 OS9 OE77 - 권이 OS2 015 2641	, () 10,	일산 031-81/-4189, 홍포 032-/15-53/6 울산 052-263-7006

4	3 개천절	2	_		125 11 NOV 2025
E SATURDAY	, 금 FRIDAY	Y 号 THURSDAY	◆ WEDNESDAY	화 TUESDAY	월 MONDAY
	Q&A 코너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	8321 년 308, 부 8-9677 4189, 현 052-2	OCT
The state of the s	세무·회계 30분내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회계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자문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를 4	사울 829-7557, 7575[처리처리] 강남 516-4199, 사초 6245-7502 상성 571-3700, 여익도 6959-2378 선택을 2209-0710, 영료포 2633-9243 기사 7078-8938 기산대지팀 6011-5514	5, 8656747正 027 7073 77E 稅利處理 는 세무박사
안건조세정보 상품안내	www.eAnSe.com	Accounting outsourcing		안세회계법인의 전국지점망	<u> </u>

E SATURDAY	4	11	18	25	(1) 시민(1) 전 (1) 전
금 FRIDAY	3 개천절	10 바이스트세 문화 원찬징수분 납부 주면세종업원원 시교보다 매자세(지반교육사동들세 포항 신고남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남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남부	17	24	31 여행말 결산법인 법인새분 지방소득세 신고 남학소비세(유류 등) 신고남부 교통세교육사주행세 포함 자전신고남부 유생대육세 포함 지전신고남부 28-2로스득 지럽영체서 제출 20지급명세서 제출
목 THURSDAY	5	9 한글날	16	23 &?	30
← WEDNESDAY	1	8 대체 휴일	15	22	29
화 TUESDAY		7	14	21 =9.1	28
월 MONDAY	NOV	수석 음8.15	13	20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7 부가가자세 제2기분 예정신고남부 개별소비세 3분기 신고남부
일 SUNDAY	9 SEP 202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12	19	26

상품안내 SATURDAY 아거조세정보 선 뻐 2 15 29 ∞ 금 FRIDAY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www.eAnSe.com Q&A 코너 세무·회계 30분내 ᅋ 14 28 2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THURSDAY Accounting outsourcing ◆회계감사·세무조정·재무경영자문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20 =10.1 머 13 27 9 → WEDNESDAY 강남 516-4189, 서초 6245-7502 상성 57-370, 여익도 685-2378 센트별 2209-0710, 영등도 2633-9243 가산 2026-8838, 가산디자탈 6011-5514 부산경남 607-322-823 대작항정 6011-5514 부산점 601-819-3308, 부산동안 601-714-7227 부산번털 051-938-9677, 경인 032-815-2641 일산 031-817-4189, 속도 032-715-5376 울산 052-263-7006 서울 829-7557, 7575[처리처리] 전국지점망 12 **9**2 19 5 TUESDAY 안세회계법인의 음9.15 현 18 25 4 법안소독세(동특세 포함) 원천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당) 신고남부 레제서(대원교육사동특세 포함) 신고남부 특별장수 지방소특세 남부 증권증거래서 신고남부 2025 F S 5 6 12 13 19 20 26 27 0웃소싱, 기업기차항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MONDAY 11 18 25 ள 24 2 S 7 114 21 28 m 11 18 25 2025 F S 3 4 일 SUNDAY 9 116 23 30 15 22 23 29 6 7 13 14 20 21 27 28 OCT □ 200 5 12 19 26

2026 F S 2 3 9 10 16 17 23 24 30 31 상품안내 **E SATURDAY** 8 15 22 29 7 21 28 28 안건조세정보 음11.1 6 113 20 27 NA N 12 13 26 20 13 27 -s 11 81 82 9 2025 F S 8 15 22 29 21 28 28 금 FRIDAY 。세무·회계·재경동영상강의 6 13 20 27 www.eAnSe.com Q&A 코너 5 12 19 26 ≥ 세무·회계 30돈내 4 L1 13 25 25 25 25 ŠΑ 3 10 17 24 12 19 92 T s 2 6 9 8 16 9 8 5 등에 붙여서 사용하십시요 목 THURSDAY Accounting outsourcing ◆회계감사 · 세무조정 · 재무경영자문 분야 전문강사 파견사업(재경고문) 정기간행물 회원 사업(829-7575) ◆개별 기업방문교육훈련 및 관리 ◆재경컨설팅자료와 주간·월간 등 성탄절 ◆회계·세무·재무·경리 포괄외주화 음10.15 18 4 복사하시거나 오려서 책상유리내 . 칸막이 . 일반달력 앞 합인세 신고남부 당세 포함) 제2기분 남부 등) 신고남부 방세 포함) 자전신고남부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포함) 신고남부 中 WEDNESDAY 9월말 결산법인 법인체 신고남부 자동차세(지원교육시 포함) 제2기 개별소비세(유물 등 시고입류 교육세교육체수형체 모함 기관에 교육세교육 제품한 신고입류 음원(교육 포함) 신고남부 일본(교육 지명에서 제출 간이지금명세서 제출 법인소특세동특세 포함, 원 주민세종업원뿐, 신고답부 리자세(전방교육세동특세 포 특별장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답부 전국지점망 24 31 3 TUESDAY 안세회계법인의 ᆏ 16 23 90 6 3월만 결산법인 밥인세 중간에납 중합소득세 중간에납계액 납부 중한소득세 중간에 전체에 대한 교육세(등당원임원) 제3기부 개념소비세 (유류 등) 주세(교육세 포함) 시고납부 교육세(교육사육에 표함) 시고납부 교용기급명세서 제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남부 아웃소싱, 기업가치향상, 경영권승계자문 829-7575 월 MONDAY 절세전략건의와 경영자문 稅利處理는 세무박사 (3272 - 308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ᄣ 15 22 29 ∞ 일 SUNDAY 뭄 4

2025년 세무일지

※신고납부 등의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국기법 §5①).

■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금)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2024. 12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자진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2024. 12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2024. 12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2024. 12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농특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2024. 12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2024. 12월 반출수입분
27(월)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확정신고납부	부가세 §49	2024. 7월~12월 확정분
	개별소비세 4분기 신고납부	개소세 §9§10	2024년 4분기 판매반출분
31(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	소득세 §65	2024년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23	9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2024. 12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2024. 12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2024. 11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4. 12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4. 12월분

■ 2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월)	법안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법인세 §73·§98, 소득세 §128	1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1월 급여지급분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78	2024년 귀속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1월 경륜·경정·경마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마감일	법인세 §121	2024분(전년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1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1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1월 반출수입분
25(화)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환급	부가세 §59	2024. 2기분(일반환급대상)
28(금)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6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1월 판매·반출분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4기분 신고납부	교육세 §9	2024. 10월~12월 수익금액 해당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1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2024. 12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1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1월분

■3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2월 원천징수분연말정산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2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2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2월 원천징수분연말정산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2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지급명세서(근로소득분) 제출	소득세 §164	2024년 지급분
20(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2월 반출수입분
31(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등	법인세 §60·§64	2024. 12월말 결산법인
	(해외현지법인 자료 포함)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2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2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1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2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2월분

■4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3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3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3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3월분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3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3월 반출수입분
25(금)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납부	부가세 §48	1월~3월분
	개별소비세 1분기 신고납부	개소세 §9§10	2025년 1분기 판매반출분
30(수)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103의23	2024년 1월~12월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3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3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2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3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3월분

■5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2(월)	법안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4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4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4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4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4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4월 반출수입분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2(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9월말 결산(2024. 10월~2025. 3월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76·§110, 지방세 §95	2024년 귀속 종합퇴작양도소득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포함)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1기분 신고납부	교육세 §9	1월~3월 수익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4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4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3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4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4월분
10(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5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5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5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5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5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금)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5월 반출수입분
30(월)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 §60·§64	3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5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지방세 §137, 교육세 §10	5월 판매반출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1기분 납부	지방세 §128·§152	2025년 제1기분(1월~6월) 고지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4월 출고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2024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5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5월분

■7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6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6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6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6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6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6월 반출수입분		
25(금)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납부	부가세 §49	1월~6월 거래분		
	개별소비세 2분기 신고납부	개소세 §9§10	2025년 2분기 판매반출분		
31(목)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103의23	3월말(2024. 4월~2025. 3월)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6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6월 판매반출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지방세 §115·§152	건축물선박항공가주택(세액의 1/2) 해당		
			고지분		
	주민세 재산분 납부	지방세 §83·§152	사업소 연면적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147·§152(조례로 정함)	해당고지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5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6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6월분		

■8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7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7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7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7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7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7월 반출수입분
25(월)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환급(내국법인)	부가세 §59	2025. 1기분(일반환급대상)

■9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12월말 결산법인 1월~6월 소득분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신고납부	교육세 §9	2기분(4월~6월) 수익금액 합당분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지방세 §79·§152	개인·법인 균등할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7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7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6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7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7월분
10(수)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8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8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8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8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8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2(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8월 반출수입분
30(화)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지방세 §115·§152	토지·주택(세액의 1/2) 해당고지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 §60§64	6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8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8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7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8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8월분

■10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금)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9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9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9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9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9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9월 반출수입분
27(월)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신고납부	부가세 §48	7월~9월 거래분
	개별소비세 3분기 신고납부	개소세 §9·§10	2025년 3분기 판매반출분
31(금)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91103의23	2024. 7월~2025. 6월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9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9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8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9월분

■ 1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0(월)	법안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10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10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10월 경륜·경정·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10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10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20(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10월 반출수입분

■12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근 거 법	대 상
1(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63	4월~9월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소득세 §65	1월~6월 중간예납 기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소득세 §65	1월~6월 중간예납 기간분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3기분 신고납부	교육세 §9	7월~9월 수익금액 해당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10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10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통세 §10	9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10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10월분
10(수)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11월 원천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지방세 §84의6	11월 급여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43·§152, 농특세 §7	11월 경륜경장경마분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세 §103의13	11월 원천징수분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10	11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15(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16	2025년 해당분(주택토지)
22(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세 §60·§152	11월 반출수입분
31(수)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 §60·§64	9월말 결산법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2기분 납부	지방세 §128·§152	2025년 제2기
			(7월~12월) 고지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개소세 §9·§10, 교육세 §10, 농특세 §7	11월 판매반출분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교통세 §7, 교육세 §10	11월 판매반출분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 §23, 교육세 §10	10월 출고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	2025. 11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164의3	2025. 11월분

법정 4대보험의 개요 및 보험료 부담 계산·납부 방법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목적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따른 연금 지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의 구제
	시행	1988.1	1977.7	1995.7	1964.7
,	사업장 적용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상시 1인 이상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65세 미만자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	1월 미만 근무자	1월 미만 근무자	사업주, 외국인	사업주 (예외적 가입 가능)
	외국인 입여부	원칙적 가입대상	※ 국가별 차등 적용 가입대상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가입 가능	가입대상
지	격취득	입사일	입사일	입사일	입사일
지	격상실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근로자	표준보수월액 ×4.5%	표준소득월액 ×3.545%	임금총액×0.9% (실업급여)	없음
보험료	사용자	표준보수월액 ×4.5% 합 : 9%	표준소득월액 ×3.545% 합 : 7.09%	임금총액× 실업급여: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사업규모별 차이)	임금총액× 0.007~0.553 (업종별 차이)
	보장 내용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비 건강검진 장제비	실업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08.7.1.이후)
	주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上表	
(수행))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급여총액×0.5%(50명 초과인 사업장에 부과됨)

조세법 핵심개요

주요 세법개요의 내용은 2024년 12월 19일 현재까지 보도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시는 최종 확정공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실수나 적용오류는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법인세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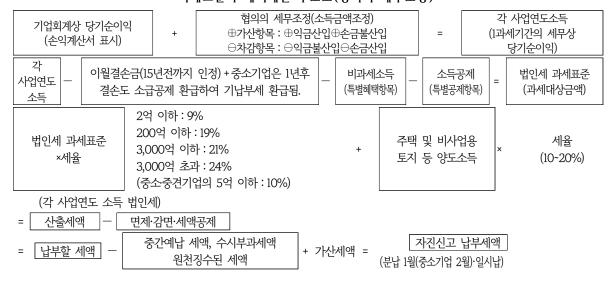
1 법인이 내야 하는 소득이익에 대한 세금의 종류

법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매년의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 법인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비교표와 같다.

• 각 소득원천별 과세여부 •

N		=1 .10101= . =0=1 -0=1 .0101.0		
	<u> </u>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차익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	유형별	(9%~24%)	대한 법인세(10~20%)	(10%~25%)
내 :	국영 리	국내외의 모든 소득	•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	• 해산(합병)시의 청산소득
법	인법 인	2억 이하:9%	익의 법인세 과세:10%	조합법인 등: 9%
		200억 이하 : 19%	。 법인주택·주거용 건축물 양	
		3,000억 이하 : 21%	도차익 : 20%	
		3,000억 초과 : 24%		
		。 조합법인 등:당기순익×9%(20억원 초과분		
		12%)		
	비영리법인	• 국내외의 모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위와 같음 : 과세	• 납세의무 없음.(국가 귀
				속)
외 -	국 영 리 법 인	o 국내 원천소득	∘ 위와 같음 : 과세	• 납세의무 없음.
법	인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위와 같음 : 과세	∘ 납세의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도(광의의 세무조정) •



2. 매출·지출·비용·원가의 익금과 손금비교

항 목구분 과세여부	수 입·수 익 항 목	지 출 · 비 용 항 목
과세포함:	순재산 증가거래, 이익창출항목, 모든 사업상의 영업수입	손금불산입, 손비계상한 잉여금 처분액, 임원상여금과
익금산입	금액, 수입수수료, 부동산임대주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간	퇴직금의 규정초과액, 법인세·외국납부조세·주민세 및
손금불산입	주임대료,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입 수익, 자산의 양도	벌과금: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업무무관경
	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합병·분할차익, 보	비, 각종 충당금 준비금의 세무상 한도초과액, 주식할
	험업법상 고정자산 평가차익, 무상자산수증이익, 채무면	인발행차금, 자산평가차손, 건설자금이자, 채권자불분
	제 부채감소이익, 손금처리된 금액의 환입, 손금계상한	명 사채이자, 소득귀속자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적립금 준비금 환입, 배당금과 분배금의제액, 폐기물예치	할인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5년내
	금 반환액,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간주익금(차입금	이월손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지급이자 불산입(업
	과다 부동산임대업 주사업자만 해당함), 토지재평가차익	무무관, 비업무용 목적), 소비성 사업의 광고선전비
	재원(1% 과세분)의 무상증자	
과세제외: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출자전환	순재산 감소거래, 제반원가항목, 원가, 업무상 귀속손
익금불산입	으로 인한 채무면제익,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	비나 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원료의 매입가액, 공
손금산입	병·분할차익, 이월익금, 고정자산의 평가차익과 재평가법	사원가, 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 매출할인·판매장려
	상 재평가차익, 법인세 등 환급·충당액, 국세·지방세 과오	금, 광고선전비, 모든 인건비, 복리후생적 비용, 퇴직
	납환급금 이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부가가치세 매출세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자산임차료, 리스비용,
	액,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지분율에 따라	금융비용, 차입금이자, 대손금, 자산평가차손, 퇴직급
	100~30% 과세 제외), 이월결손금보전을 위한 자산수증	여충당금 전입, 대손충당금 전입, 각종 준비금 및 충
	이익과 국고보조금, 채무면제이익, 합병차익(부동산)의 대	당금, 폐기물예치금 납부액,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
	응손금산입, 토지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 대응(1%분에 대	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해), 상생협력 수입배당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	배당금지급액(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장식용
	고자산평가차익	소액 미술품, 현물출자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 인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모든 내국·외국법인	양도가액(실거래가액)	• 법인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10~20%
(비영리법인 포함)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미등기시 40%)
	양도 직접 관련비용	
비영리 내국법인이	∘ 소득법 §92, 기준시가 차액(혹은 실거래 차이)	소득법 §104의 양도소득세율 적용(6~45%)
과표를 무신고하는	장기보유공제	
경우	— 기본공제(250만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파산선고처분, 환지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구분	과 세	표 준	세 율
영 리 내 국 법 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후 사업계속 등기시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중소·중견기업의 5억 이하: 10%)

5. 세액공제

구 분	요 건	공 제 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간접투자회사투 자신탁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포함)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영 참조) 국내모기업이 출자(25% 이상)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이 5% 이상 출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영위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58)	 내국법인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때○ 1개월내에 신청요	 공제액(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함)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공제·감면세액) ★ 상실된 자산가액 사업용총자산가액 사업용 자산가액에 토지는 제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 §58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하여 경정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으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때	법인세액에서 5년간 순차적으로 공제

7. 준비금과 충당금

구 분	요 건	적 립 범 위
고유목적사업준비 금(법 §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목적 	 이자소득금액(소득 §16①, 비영업대금이자 제외)⊕배당소득금액⊕ 복지융자이자금액⊕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80%)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 등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범위에서 손금산입
책임준비금 (법 §30)	· 보험업 영위법인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전보험해약 환급액+추정보험금 상당액⊕ 배당준비금(손금산입기준에 따른 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법 §30)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보험업 영 위법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적립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의 경과보험료*금감위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준비금의 누적액은 단기손해보험의 정미수입보험료 합계액의 50%(40%)를 한도로 함.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적립금의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해약환급준비금 (법 §32)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선성 유지 위해 적립	o 해약환급적립액 신고조정 손금인정
대 손충당금 (법 §34)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기설정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可 	○ 채권장부가액x1%와 채권잔액×대손실적비율(=대손금/직전년 채권 잔액) 금액 중 큰 금액
구상채권상각충당 금(법 §35)	 신용보증사업 영위법인 및 지역신용보증조합 임의상계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 ○ 적립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7. 법인세법상 가산세(법 제76조)

종 류	요 건	세 율
무신고(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제외)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 적용시 큰 금액을 적용	
(국기법 §47의2①)	· 한.	
과소·초과환급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	• 과소·초과환급신고액×10%
가산세(국기법 §47의3①,	과하여 신고한 때	
§47의4)		
부당과소:무신고등 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거	• 부당과소무신고세액×40%와 수입금액×0.14%
(국기법 §47의2②,	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중 큰 금액
§47의3②)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 산출세액×20%와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
(법 §76①) 원천징수납부 등	 세액의 미납미달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뒤	(산출세액 없는 경우 수입금액×0.07%)
변선성구립구 등 불성실가산세	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 (미립(과고립구/세력^5%) * 미립세력^미립기간 *0.022%)≦미납세액*10%
(국기법 §47의5)	에 납구에게다 경구납구에게 어디면 때 	^U.U2Z70) 을 미럽게(믝^IU70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법인이 미제출, 누락불분	애며가앤-축자가액×0 5%
불성실가산세(법 §75의2)	명시	7 tr 1 7 2 17 1 7 0.070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
제출불성실 가산세	명하게 제출한 때	는 출자가액×1%
(법 §75의2②)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보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불성실가산세(법 §75의4)	법인별 발급내역의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지 출증 빙미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사계산서	
가산세(법 §75의5)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시오카드메초자교	기이기드메호기교 바그의 카버리카 로토 기사	. 비그리브그에 ㅠㄴ 기치리 리크레 바그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실	
발급 불성실가산세(법 §75의6)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액×5%≧5,000원
현금영수증가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 혀금영수증가맹점 미가인시 수입금액x1%
및 발급불성실	발급을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
가산세(법 §75의6)		한 금액×5%≧5,000원
_1==1.0.1.0=		, i
지급명세서제출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	
불성실가산세	세서가 불분명한 때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지연제출 0.125%))
(법 §75의7)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	• 각 공급가액×0.5%
계산서합계표	재	(미발급위장가공발급등 2%)
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법 §75의8)	가산세	
특정외국법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시	• 유보소득금액×0.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법		
§75의9)		

·부가가치세법 개요·

1. 부가가치세법 개요

_					
	구			일 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납	세 으	무	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
				인, 개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영리목적	업자
				의 유무불문) 및 재화의 수입자	
				−제9조 : 재화의 공급	
				−제l1조 : 용역의 공급	
				−제l3조 : 재화의 수입	
과	세	대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무체물, 사용소비되는 소모재화) -화폐·수
				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제외	
				○전자적 용역 과세:해외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	자적 용역에 대해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
				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함.	
과	세	기	간	o제l기⇨1월 1일~6월 30일	이월 1일~12월 31일
				⊙제2기⊏>7월 1일~12월 31일	
납	서	1	지	o각 사업장마다 납부	
				○총괄납부사업자는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업장)♡	서만 신청하여 총괄 납부가능함(신고서는 각 사업장 세
				액은 ⊕⊖ 상계하여 납부).	
				o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일화 및	세금계산서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가능하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신고납부 가능함.	
면			세	○면제되는 재화용역⇒영 §34~영 §58	
영	서]		o수출하는 재화	∘일반과세자와 같이 적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o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과	세	표	준	부가세 10%가 불포함 순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급대가
				∘ 금전 대가 수령시⇨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 수령시⇨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부당대가 수령 또는 대가없	
				는 경우=>시가	
				∘ 폐업시 재고자산⇨시가	
				공급시기의 외화환산가액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에너가환경세의 합계액	
				과세표준 불산입금액	
				○ 에누리액 ○ 하이되 개하이 가해 바프그애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반품금액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손괴 또는 멸	
				· 응급받는 사에게 오늘하기 전에 퍼곤곤피 또는 날 실된 재화의 가액	
				실천 세와의 기억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국고모조금과 응승모조금 ○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 저화용역 공급후의 할인액	
1				,,,,,,,,,,,,,,,,,,,,,,,,,,,,,,,,,,,,,,,	ı

구 분	일 반 과 세 사 업 자	간 이 과 세 자
	재화용역 공급대가 아닌 것	
	협회비·찬조금·특별회비	
	。 원자재 공급받아 포함시키는 금액	
	○ 공급확정후의 환율차액	
	o매출액×10%, 매입액×10%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
신 고·납부	○ 예정신고기간	○ 각 3개월마다의 자진예정신고 안하고 또한 세무서의
	□ 제1기: 1월 1일~3월 31일 □ 제2기: 7일 1일 2일 20일	예정고지없이 자진확정신고만 함.
		·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 있음.
	○ 에/3선교립구 □> 제1기 : 4월 25일(외국법인도 동일)	
	□ 제2기: 10월 25일(외국법인도 동일)	
	* 직전과세기간부터 계속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고지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정고지 생략	
	*재화의 수입에 따라 관세의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도 신고·납부함.	
	○ 확정신고납부	※사업서비스업 등 관련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
	│ ⇨ 제1기 : 7월 25일 ⇨ 제2기 : 익연도 1월 25일	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
	→ 제2기·익인도 1월 25일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출해야 함.
	· 매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 교부·신고시 매출·매입처별	o 매축매인처벽 세근계사서 한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환 급	。 조기환급⇒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	◦ 없 음.
	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신고기한 경과후 15일내	
	환급),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인 사업자	
	· 일반환급: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확정신	
	고기한후 30일내 환급)	
세 액	。 공급가액×10%—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납부	<간이과세자>
	세액 또는 환급세액	○(공급대기×업종별 부가율×10%)─(매입액×0.5%)
	※ 업종별 부가가치율	○위 두 겸영시
	※ 업종별 부가가치율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에 위 율을 각각 적용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	
	식점업 기계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20%	
	<mark> 운수 및 통신업 2078 </mark>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 0007	
	스업	
세애고제 드	다 변 나는 비 아 대손세액공제(법 §45)	
계곡하세 등	-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시 대손금액의	이 110년이 10은 매츠세애에서 친가
	· 재고매입세액공제(법 \$44)	기 IIO단기 IO된 "N본/기 기계기 시계
		고품·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영 §63의2
	가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조특법 §108)	
	, , , , , , , , , , , , , , , , , , , ,	
	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취득가액으로 1	
I	1 1 2 1 1 2 0 1 1 2 0 1 1 2 0 1 1 7 1 7	

세액공제 등 | • 의제매입세액공제(법 §42)

- 부가세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구입액의 2/102, 음식점업은 6/106(개인 8/108, 2억 이하 개인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중소제조업 4/104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 신용카드 등 관련 매입세액공제(법 §46)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전자화폐발행세액 공제율 1.3%(연 1,000만원 한도), 법인 및 일정금액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개인사업자만 적용 해당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공통요건 및 관련규정 등

	구	분		개념 및 요건방법	관련규정 및 적용예시
거	래	시	점	 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한 과세대상 재 화용역 	법률 부칙(93. 12. 31 신설) 제2조(일반적 적용례)
공 기	제	가	능 간	재화용역 공급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 정된 대손금액	 시행령 제87조제2항: 재화·용역공급일(세금계산서 거래일 자)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 함. 2018. 7. 1 공급된 것이면 만 3년이 되는 2021년 하반기가 과세기간이므로 2022년 1월 25일까지 대손확정된 것이면 가능
	손 제	세 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매출 세액에서 빼줌(즉, 소멸시효된 날 등 대손확정 된 날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점에 차감하고 납부세액 계산함). 	 법 제45조제[항(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가 아니고 확정신 고서 제출하는 때에 신청함:시행령 제87조제2항)
학	7	청	손일	 거래상대방의 파산선고일, 강제집행일, 사망실종 선고일,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상법상소멸시효완성일(상법 제64조는 5년간, 단서의규정에 의거 민사 단기소멸시효규정 제163조적용으로 3년간임),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된 시점(부도어음·수표는 부도일 6개월이 되는 날(만 6개월), 혹은 이때를 지나쳤다면 외상거래에 대한 단기소멸 시효일인 3년이 되는 때도 가능함.) 	 적용례 ① 어음(제3자 발행승계어음도 해당)·수표거래·부도방 찍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확정신고기간 ② 일반외상거래: 매출(인도·세금계산서날)일부터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나 민법상 단기소멸 시효인 3년 우선 적용) ③ 회사가 원하면 일반 상거래도 단기 소멸시효 적용으로 만 3년이 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능
		세 계	액 산	• 부가가치세 포함 총 대손금액(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인정금액:시효완성금액)×10/110	법 제45조제[항(회수못한 금액을 세금 등으로 지정하더라 도 안분함)

3. 부가가치세의 각 위반유형별 가산세 요약

유 형	가산세 적용 사유	기 준 금 액	가산세
사업자미등록	• 사업자등록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1%
		(혹은 과세기간)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공급가액	2%
세금계산서부실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 발급	당해 공급가액	1%
재교부 가산세	◦ 착오 또는 과실로 공급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허위기재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둘 이상의 사업장 보유시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경과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당해 공급가액	0.3%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경과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당해 공급가액	0.5%
미전송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허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당해 공급가액	2%
위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본문:1. 합계표 미제출	당해 공급가액	0.5%
미제출, 부실기재	2. 부실기재·허위기재		
가산세	3.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사항 착오(미확인)문제		
지연제출			0.3%
매입처별	합계표에 의하지 않거나 과다기재	당해 공급가액	0.5%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예정신고 매입자료가	
미제출 등	등록번호 착오기재(확인되는 부분)	확정신고시	
	· 공급가액 부실기재	제출·신고되어도	
		가산세불이익 없음)	
비사업자의	◦ 비사업자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받	당해 공급가액	2%
세금계산서	은 경우		
발급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가산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예정·확정신고기한내 적법히 제출		0.5%
세	하지 않고 경정기관확인후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과다신고		0.5%
현금매출명세서나	전문직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	당해 수입금액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	출 및 부실기재 제출한 경우		
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당해 세액	10%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시		20%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40%
	신고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세액×기간×
			하루당
			0.022%
영세율적용 과표신고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0.5%
불성실가산세			

(가산세의 이중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적용을 배제한다.

-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및 매출합계표 불성실제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제출 가산세는 적용하 지 아니함.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기재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와 전자세금명세서 교부명세 기한 후 전송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적용 배제함.

4. 영세율과 면세의 세무절차 비교

구 분	면세적용사업자	영세율적용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의	있 음.
	무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있음(내국신용장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 해외직
	발급의무 있음).	접수출시 발급의무면제됨. 원하면 작성:발급해야 함).
거래징수의무	없 음.	있음(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영이 됨).
과세표준과 세액의	없 음.	있음.
신고·납부의무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은 없으며,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함.
	환급이 되지 아니함.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있음(미제출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없음).	있 음.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있 음.	있 음.
기장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의	있 음.
	무 있음).	
금전등록기 설치의무	없음(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금전등	있 음.
	록기 설치의무가 있음).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적용됨.

5. 세금계산서 작성:발급 관련 세법상 요건과 규제

(재화·용역공급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필요기재사항의 누락, 사실과 다른 기재, 미발급, 허위발급, 타인명의 발급
 - 공급가액의 1% 또는 2%·3%의 가산세가 부과됨.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기한후 전송)
 - -0.5%(0.3%)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누락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
 - 해당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무신고 미납부, 불성실신고
 - 무신고납부세액·미납부세액×10%(20%, 40%)의 가산세 부과, 신고후미납·과소납: 세액×기간×하루 10만 분의 22
-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해당공급가액×10%의 부가가치세 본세를 추징하며 상기의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미납부가산세·미교부가산세 등)
-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처벌-조세범처벌법상 1년 징역이나 세금의 2배 벌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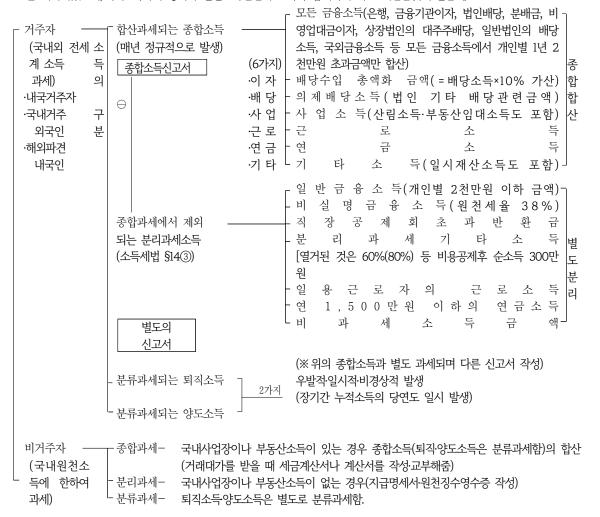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 매입세금계산서없이 공제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매입가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매입세액공제가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매입세액공제 적용신고·납부되었다 면 추징됨.
- 세금계산서를 억지로 교부받지 않는 경우-3년 징역이나 100만원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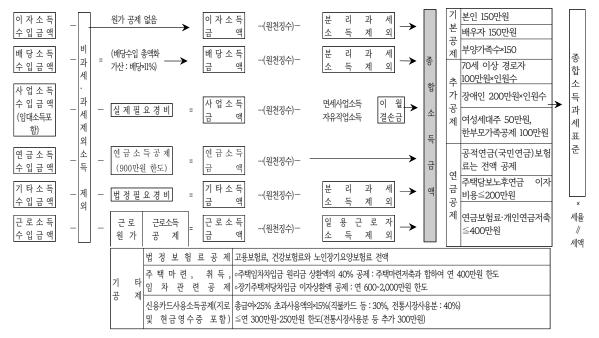
·소득세법 개요·

1. 과세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의 종합 도해 설명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헌재의 위헌판결(2001헌바82, 2002. 8. 29)로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되었으며, 부부 각자의 명의와 실질소득원천대로 각각 합계하여 따로 계산함(부부별산제).



2.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흐름도



구 분(공제순)	공 제 범 위
배당세액공제(법 §56)	 법 §17①14. 배당소득에 대하여 공제(배당소득 총액화 가산후 공제)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상당액만 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기장세액공제(법 §56의2)	o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시 20% 공제(100만원 한도)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법 \$56의3)	o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법 §57)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법 §118의6)□〉양도소득산출세액×(국외자산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법 §58)	○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때 ○ 재해발생연도에 납부할 소득세(가산세액 포함)×상실비율(재해손실가액을 한도로 함)
근로소득세액공제(법 §59) (납세조합가입자 포함)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30%+71만5천원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천만원 이하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만원 한도)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시는 일률적으로 55%씩 세액공제(한도: 연 500,000원)
자녀세액공제(법 §59의2)	○ 출산·입양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자녀 1~2명은 25·30만원/명, 3명 이상은 40만원/명
연금저축·퇴직연금(법 §59의3)	o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법 §59의4) 기부금,보장성보험료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사용액 15% 세액공제 - ○ 기부금 사용액 15%(30%) 세액공제 ○보험료 12% 세액공제

3.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6%~45%의 8단계 초과소득 누진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400만원까지	∘6%(= 과세표준×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84만원 +1,400만원 초과액×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이,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	∘3,706만원 +1억5,000만원 초과액×38%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9,406만원+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이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10억원 초과액×45%		

^{*}근로소득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세액×30% 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공제, 산식:[산출세액-130만원]×30%+130만원×55%), 세액공제 계산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74만원-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함.

4 퇴직소득 가세표준가 세액계산흐름도

②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근속 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 연수-20년)

(나)(연분) ⑦:근속연수×12

(다)(나-환산급여 차등공제)×기본세율(6~45%)

환산급여	차 등공 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라) (연승) (마÷12×근속연수

5.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흐름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양도비)}(양도 차익이라 함)─장기보유특별공제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 하루 일당 15만원씩 공제후 일괄 6%를 곱하여 55% 세액공제함. 세액=(일당—15만원)×6%×45%(세액공제 적용비율 55% 차감 후인 45%)

• 양도소득세율 •

일반양도소득 과세표준	적 용 세 율			
∘ 1,400만원까지	◦ 6%(=과세표준×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까지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	。 3,706만원 +1억5,000만원 초과액×38%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42%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10억원 초과액×45%			

특 별 양 도 소 득	적 용 세 율		
·미등기 양도자산(입주권 포함): 70%	· 주권상장주식(코스닥상장 포함)		
·1년 미만 보유자산: 50%(주택·입주권·분양권은 70%)	— 소액 주주 양도 : 비과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40%(주택·입주권·분양권	— 대기업 고액 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은 60%)	— 대기업주식 1년 이상 보유:20%(25%)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도 일반세율(6~45%) 적용	— 중소기업 주식 : 10%(고액 주주 20%)		
· 비사업용토지 : 16%~55%	・비상장주식		
·조정지역내 주택입주권: 60%~70%	— 대기업 고액 주주 1년 미만 보유:30%		
·조정지역내 1세대2주택 : 일반세율 + 20%	— 대기업 고액 주주 1년 이상 보유 : 20%(25%)		
·조정지역내 1세대3주택 : 일반세율 + 30%	— 대기업 소액 주주 : 20%		
	— 중소기업 주식 : 10%(고액주주 20%)		
	· 파생상품 : 20%		
	· 신탁수익권 : 20%(25%)		

주식관련 양도소득세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 인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일반법인	
주 주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고액	1년 미만 보유양도	30%	20%	30%	20%	30%	20%
주주	3억 이하	20%	20%	20%	20%	20%	20%
	3억 초과	25%	2070	25%	2070	25%	2070
	일반 주주(장외거래)	20%	10%	20%	10%	20%	10%
	일반 주주(장내거래)	0%	0%	0%	0%	20%	10%

6.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기한과 가산세 등 비교요약

유 형· 소 구분	과세 기간	납세의무 성 립 일	신고납부 기 한	납세의무 확 정 일	기한후의 가산세율	비고 및 특기사항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1. 1~ 12. 31	매년 12. 31	차년 5. 31	자진신고 납부일 (5. 31)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40%) 가산세+미납부액×이자율(하루 10만분의 22)	과세기간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1. 1~ 12. 31		매월 10일 괄정산은 3월 10일		3%+미납부기간 하루당 0.022%≦ 세액×10%	소득지급시마다 징수납부함.
양도소득 예정신고 (토지매각 예정신고)		양도월 말일 정신고도 밀수임.	다음다음월 말일(부담부증여시 는 3개월) 주식은 반기말+2달	자진신고 납부일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40%) 가산세+미납부액×이자율(하루 10만분의 22)	각 양도소득을 1년간 합산함.

이자배당 등	각 지급	각 지급시점	다음달 10일	각	3% + 미납부기간 하	루당	각 소득을 1년간
분리소득	시점			지급시점	0.022%≦세액×10%		합산함.
납세조합	1. 1~	발생월	징수월	발생월	5%		각 소득을 1년간
가입소득	12. 31	다음달 말일	다음달 10일	다음달 말일			합산함.

7.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연간 근로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들 (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자	레 적용 시	활용		
(-)근 <u>로소</u> 득 공제	총급여액500만원 이하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 초과	공제율 70% 40% 15% 5% 2%	• 공제한도 :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2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출생·입양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로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 직역연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 금(전액 공제)				
(-)기타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자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에 따라 100~30%)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다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0%와 급여수페이 포함), 대중교통, 문화체육·공연·1	에 : 연 600 종합저축에 }제 : 출자-! +카드, 선불 중교통·제! 준별 300만 미술관 이용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투자액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 로페이 이용분 40%·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경우 30%)를 난원~25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사용분(제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기본세율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10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2명은 25:30만원/명, 3				
	• 출산·입양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첫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기	1			
	• 교육비 : 사용액 15% 세액공제				
	• 기부금 : 기부금 사용액 15% 세액공제				
(-)세액 공 제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12% 세액공제	77 - 1)			
	• 연금저축·퇴직연금 : 불입액의 12%(15%) 세액	중세			
	• 표준공제 : 근로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	l, 3300만~7000만원한도 66만원, 7000만원~1.2억한도 50만			
	' * 근도소득세획등세 : 0~3300원원인도 74원원 원, 1.2억원 초과한도 20만원	1, 3300년~7000년원인도 60년원, 7000년원~1.2억인도 50년			
		이사 150/ 세애고계			
	●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 91% 10만원 이상 15% 세액공제				
결정세액	• 미분양 주택이자 : 10만원 이하 91% 10만원 이상 15%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금액)				
	(= 선물제역 - 제역중제'검단금역) [구(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6-7414		발생시학의 합계학			
키기지스 네애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애 > 기납부세애 : 키애유 납비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화급				
	[결정계곡 > 기급구세력 · 사력을 된답				

8. 인적자원조달, 인력채용, 고용, 사람활용방법과 보수지급

소 득구분 계약	대상범위 및 개념	법적지급의무 금액들	세무상 절차
근로소득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월급연봉상여금보너스성과급	o 근로소득원천징수
(근로계약,	상근임원 등 종속적 고용관계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 법인부담분은 비용 인정, 개인부담
근로기준법)		보험료, 연금퇴직금전환금	분은 소득공제(공과금처리 개인부담 분은 소득공제 안됨)
퇴직소득		근퇴법이나 퇴직급여규정·사규 등에 따른 퇴직금(=평균급여×근속연수의	퇴직소득원천징수(근로소득과는 별개
(근로계약, 근퇴법)	(8년 년 등 등 국 보통한계	기준율)	도 군규 식세림)
일용근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일당	하루 일당×근무일수	일별원천징수(기본 15만원 공제), 명세
소득	직		작성, 연말정산은 안함.
사업소득	부가세 면제 인적용역서비스	• 계약된 자문보수	부가세 면제되는 개인적 용역수입의
(자유직업적	독립적 고용관계	•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무일수나 기	3%를 사업소득원천징수한 후, 수입·소
사업소득)	비상근 임원	여도에 따라 보수지급 가능(근로소	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 31
	。 외부전문가 고문계약(국선변	득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임.	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납부함(부가세
	호·법률구조 등)	。 비상근 임원보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문면허직업자는 원칙적으
	• 모집수당 인센티브 및 계속적		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이므로 원천징수
	수입	수되는 자유직업소득 가능함.	대상아님).

	3.3% 원천징수후 종합소득합산	의료보건(의사 등 유사의료전문직, 약	사수의사, 각종 보건서비스), 저술작곡,
	가능활동 및 직업의 범위 등(부	연예, 직업운동, 금융모집수당, 1인 자	기고용 독립성과수당, 강연, 관상, 동물
	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	조련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아니고 세금	의사 이외의 각종 전문자격사 사업(변	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연구기술
	계산서 발행이 원칙인 활동·직업	용역 등)	
	5.5%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접대부, 댄서, 봉사료 등	
기타소득	외부강사, 저자	일시 원고료, 기고료, 강연료, 출연	수입×40%×20%를 원천징수함(즉,
(열거된 것)	。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료, 사례금, 전속계약금, 계약금이	8%(지방소득세까지는 8.8%)만으로
		대체된 위약금, 퇴직후 직무반영보	분리과세 종결됨).
		상금, 일시재산소득 등	
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대가(독립적비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	수입×20%를 원천징수함.
(열거안된 것)	정규적)		(당첨금 3억 이상은 30%)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경영자문료·위탁료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가를 전
(법인수입)		• 컨설팅대가 등	액 지급함.

9. 각종 소득에 대한 원가인정금액과 적용세율 등

소득구분	종속 적 정규근로자(내부인)		독립적 자유근로자	기타소득 등	
항 목	근 로 소 득	퇴 직 소 득	(계약직, 외부인)	기디꼬극 등	
총 대 가	급여·보수·상여·월급·근로	퇴직으로 인해 계산	각 업무수행대가	일시적·우발적 금액	
	소득 등	되는 금액			
필요경비인정범위	。 근로소 득공 제·기본공제	• 퇴직소득에서 근	실제기장에 의한 필요경비	• 보상금, 주택입주지체상금,	
와 종류(40대	와 추가공제 등 1년에	속연수 공제후	공제	서화·골동품양도 등:필요	
중견소득자, 4인	약 2,400만원	연분계산하고 세	• 대부분의 전문자유직업	경비 80%	
가족 기준)	。 일용근로소득은 매일당	율 곱한 뒤 다시	소득자들은 기준경비율	。 산업권리·기술료, 문예창작,	
	15만원씩 개별공제후	연승계산	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함.	인적용역 : 필요경비 60%	
	6% 단일 세율 적용	• 퇴직소득 수준별	。 필요경비 = 실제발생주요경	• 나머지 열거 안된 기타소	
	(55% 세액공제)	로 차등과세	비(임차료·인건비·매입가액	득:실제경비 반영함.	
			등) + 매출수입×기준경비율	 복권소득의 필요비용은 없 	
				ᅌᆢ	
적용세율과	6%~45% 적용후 다른	6%~45% 적용으로	6%~45% 적용하여 다른 종	세율 20%로 원천징수하며, 연	
과세방법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분류 단독과세	합소득과 합산과세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로	
	(55%, 30% 세액공제)			종결	
적용요점과	50만원 세액공제(연봉	세액공제 없음	세액공제 없음(실제입증대응	。 연 300만원 이하시 원천징	
세금부담	4,600만원 자인 경우		경비 + 기준경비(= 수입액×기	수 분리과세로 종결	
분석 및 비교	2,400만원 공제한 과세		준경비율)가 인정되므로 다	。 열거된 일시·우발소득은 대	
	표준은 2,200만원, 1,200		른 소득자에 비해 비용인정	부분 총 지급금액의 8%가	
	만원까지 6%, 나머지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 세금	세금이므로 저렴함	
	15%)		부담이 적은 편임).	(=40%×20%).	
담세율 비교	제일 높음.	낮은 편임.	낮은 편임.	보통 정도	

10. 소득종류와 적용세율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종류 등

소득구분	소득자 유형	과 세	금 액	적용세율	원천징수영수증의	l 명칭
근로소득	일반근로자, 월급자	소득공제후	과표(약	6%~4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급여대
		2,000만원~	-2,500만원	(55%, 30% 세액공제)	장, 연 50만원~74만원까?	지 세액공제
		공제)				

	סופקבו מורניו	0]LF 1EU 00001 23-11	60/	이처지스여스즈 머케 ㅅㄷ키르마 미리크
	일용근로자, 일당자	일당 150,000원 공제	6%	원천징수영수증 면제, 소득기록만 비치함.
		,	(55% 세액공제)	일용근로소득자 급여지급대장
-1-1 , =	외화급여자, 외국인 등		6%~4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퇴직소득	직장퇴직자, 퇴사자(직		6%~4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환산급여에 따른		
	포함)	공제		
이자소득	일반금융이자	전 액	14%	。 원천징수영수 증 (지급명세서) 3부(이자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생		비과세	득 표시)
	계형저축, 장기저축성			◦ 14% 세율을 적용받는 일반금융기관이
	보험 등			자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되며, 개인
	비영업대금, 사채이자	전 액	25%	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
	실명미확인	전 액	45%	득 합산과세됨.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1천만원까지	9%	。 30% 이상 세율적용소득은 분리과세
	실명법 위반가명 등	전 액	90%	
			(특정채권 20%)	
	장기채권	전 액	30%(분리)	
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대주주	전 액	14%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배당소
	등) 등 모든 배당			득 표시)
	실명미확인	전 액	45%	·10% 세율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1인당 1억원 이하 투	5%	세 원천징 수 됨.
		자신탁		" '' '' '' '' '' '' '' '' '' '' '' '' '
	소액주주의 장기보유(1	전 액	비과세]°년 대 6 2년년년 44 급 7년 - 6 급 4 7 합산과세됨.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과 비
	년 이상) 우리사주배당			상장법인 일반 주주배당도 일반금융소
	영농 영어조합법인	1,200만원까지	비과세	등과 함께 2천만원 초과 개념이 적용되
	(종합과세 제외)	1,200 (2 (2))	1,200만원 초과	어 무조건 종합합산함. 30% 이상 세율
	실명법 위반 차명 등	전 액	90%	적용된 분리과세소득은 이미 최고세율
.)		_ ,	·	부담했으므로 합산 안함.
사업소득	개인적 인적용역제공자	전 액	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전문면허직업자 제외)			o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종합소득신고
	등, 프리랜서, 부가세면			
	세용역해당자만			
기타소득	기타의 용역공급자(열	열거 안된 것은 전액	20%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기타소
	거된 일사우발 기타소	혹은 열거된 것은		득 표시)
	득은 60%(80%) 비용	60%		○복권소득 등 분리과세
	공제)	(80%) 밴 후 나머지		
		과세		
봉사료	일반사업자(법인 포함)	세금계산서 등 거래	봉사료 수입금액 5%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부가세
수입		가액의 20% 초과액		10%는 과세됨.
1 1		2070 22-17		10,000 -1 11 -1.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등	 전 액	6%~45%	
_ <u></u>	각종 연금, 개인연금소	<u> </u>	 (사적연금소득·퇴직연	
	· ·			
	득		금은 총지급액×5%만	
이그이 드이	게비 스트키그	고 년 ○ □	과세함) 가 세버이 세우< 자세	이월지스여스즈(키그면비네) 9번(비키고키
	제반 소득지급	전액 등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부(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협약상 제한세율	표시, 각 소득 유형 구분 표시)
1			(10%~15%)	

^{*} 각 세율금액에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여야 총세율이 됨.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1. 소득공제 ⇒ 최저한세(법 §132) 적용

구 분	적 용 요 건	공제율방법	비 고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	출자 또는 투자액의 10%(벤처기업	· 2025. 12. 31까지 출자
합 출자 등에 대한	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	에 투자 및 출자×출자금액에 따라	또는 투자분까지 적용
소득공제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벤처기업	30%~100%)	(타인의 출자지분 등 양
(법 §16)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벤처기업·창업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수로 투자시 제외)
	벤처전문PEF 등에 투자		
②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인당 시급이 감소하지	o 근로자: 입금감소액의 50%	 2026. 12. 31까지 적용
소득공제	아니하고 근로자수 유지 및 임금감	。 중소기업 : 임금감소액×10% + 임금	
(법 §30의3)	소한 경우	보전액×15%	
③ 우리사주조합원에 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	당해연도 출연금액(400만원 한도)	•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한 소득공제	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공제
(법 §88의4)			
④ 성실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자, 연평균 수입	 의료비 및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 2026. 12. 31까지 소득
의료비등 공제	금액 초과자, 2년 이상 계속 사업자	×15%	분에서 공제
(법 §122의3)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미숙아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의	。 2025년 12월 31일까지
액의 근로소득공제	로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15%(30%40%) 해당 금액(연간	지급분(근로소득개인만
(법 §126의2)	(체크카드) 등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	300만원~250만원 한도, 전통시장사	적용)
	액과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용분 등 추가 300만원)	o 공제신청요

2. 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 중복지원배제(법 §127) 적용

구 분		공 제	금니	내 역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한 세액공제(법 §7의4)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0.5%					
	— 지급기한 15일 초과~30일니	배 지 급금 액×0.	3%			
	지급기한 30일 초과~60일	내 지급금액×0	.15%			
	* 세액공제 한도 : 법인세의	10%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출연금액×10%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	— 출연법인의 특수 관계인에 I	대한 지원은 공	공제대상	에서 제외		
공제(법 §8의3)						
③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	일 반 기 업			중 소 기 업		
액공제	R&D비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적용시 유의사항(표	신성장 원천기술		20~30% 30~40		30~40%	
하단) (법 §1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25%			① 직전년도발생액초과금액×50%		
	② 당해연도 R&D비용×기분 0%+최대 2% ② 당해연도 R&D비용×25%					
	(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 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20~35%, 그 이후 2년간 15~30%		

③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 중견기	업(조특	령 §9④)					
* 적용시 유의사항(표하단)		('13.1.1. 이후 개시 과서	네연도)	1. 중소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법 §10)		1)②중 많은 것 선택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1)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	금액×40%	3. 소유	와 경영	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족			
	1 1 7	② 당해연도 R&D비용×89					† 5천억 미민				
④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						C IIE	106116	-			
	1					EL7-l					
례 (법 §12②)	_	중소기업외의 지역 취득은				인성					
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이 띄입	#병법인에게 시급한 양노	가액 중 기술가	지 금액의 .	10%						
공제 (법 §12의3)											
	: 주스	o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세액공제(법 §12의4)											
	이 소지	h·부품·장비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	l이나 지분	취득시	취득가액의	의 5%				
한 과세특례 (법 §13의3)											
⑧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	·l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	성과급×15%								
세액공제(법 §19)											
⑨ 통합투자세액공제	◦ 모든	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적 용								
(법 §24)				당기분			 -				
		시설투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증가	문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3				
		국가전략기술	8	8		16	4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	- 영산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제 (법 §25의6)		 공제시기 : 방송·영화상영									
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						15%)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5.1.1. 이후 재고용하는		111 1007	V(OL	10 70)					
(법 §29의3)		013.1.1. 17 /1120 Yi	_ 179 70								
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 717	 거 이러 이기즈카이 떠기	ラコ ロフスコ	Hv200/							
대한 세액공제			소막 급급증기	ਦ^2070							
(법 \$29의4)		견기업 10%) - 기계업도에 거그기 기	사람 그그리어 그	م الحاليا	1 コ ス っ 1	에이 중년=	11000/(3.7	3-70-1-00/)			
(협 829의4)											
(법 \$29의4)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20%(중견기업 10%)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경우에만 스	병			
	③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B)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법 \$29의7)		l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중,	소기업		중견	1	기기언			
		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아래 금액	소기업 지방		중견 기업	τ	대기업			
	· 상시	기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아래 금액 중: 수도권 700				τ	대기업			
	· 상시	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아래 금액 중: 수도권 700	지방	00*)	기업		대기업 0(500*)			
	· · · 상사 청	기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아래 금액 중: 수도권 700 등 1,100	지방 770 1,200(1,30		기업 450 800(900					
	는 o 상시 청 * 21	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단해 () 등	r액 한시	기업 450 800(900 적용	0*) 40	0(500*)			
세액공제(법 § 29의7)	장시 청 * 21 * 중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등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아래 금액 중. 수도권 700 등 1,100 해서는 지방에 한	지방 770 1,200(1,30 단해 () 등	r액 한시	기업 450 800(900 적용	0*) 40	0(500*)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장시 청 * 21 * 중	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아래 금액 중. 수도권 700 등 1,100 해서는 지방에 한	지방 770 1,200(1,30 단해 () 등	r액 한시	기업 450 800(900 적용 병우 다음 ⁸	D*) 40 해도 세액공 ²	O(500*) 에 적용			
세액공제(법 \$ 29의7)	장시 청 * 21 * 중	니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등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시 공제:고용증가인원시인당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단해 () 등	'액 한시 나하는 건	기업 450 800(900 적용 병우 다음 ^한 공제액	D*) 40 해도 세액공기 (단위 : 만원	O(500*) 에 적용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장시 청 * 21 * 중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등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단해 () 등	남액 한시 나하는 건 중소(€	기업 450 800(900 적용 병우 다음한 공제액 공제액)*) 40 해도 세액공기 (단위 : 만원 중견	0(500*) 세 적용 대기업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장시 청 * 21 * 중	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시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단해 () 등	6액 한사 나하는 7 중소(3 수도권	기업 450 800(900 적용 병우 다음한 공제액 당년지원)	(단위: 만원 중견 (3년지원)	O(500*) 에 적용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시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구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날해 () 금 소하지 아니	남액 한사 남하는 2 중소(3 수도권 850	기업 450 800(900 적용 령우 다음한 공제액 공년지원) 지방 950	(단위 : 만원 중견 (3년지원)	O(500*) 에 적용 인) 대기업 (2년지원) -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 * 중 •기본 청년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공제 : 고용증가인원자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6액 한사 나하는 7 중소(3 수도권	기업 450 800(900 적용 병우 다음한 공제액 당년지원)	(단위: 만원 중견 (3년지원)	0(500*) 세 적용 대기업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청년 •추가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등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시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볼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남액 한사 남하는 2 중소(3 수도권 850	기업 450 800(900 적용 령우 다음한 공제액 공년지원) 지방 950	(단위 : 만원 중견 (3년지원)	O(500*) 에 적용 인) 대기업 (2년지원) -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청년 •추가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공제 : 고용증가인원자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남액 한사 남하는 2 중소(3 수도권 850	기업 450 800(900 적용 령우 다음한 공제액 공년지원) 지방 950	(단위 : 만원 중견 (3년지원)	O(500*) 에 적용 인) 대기업 (2년지원) -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청년 •추가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톡 선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중소(2 수도권 850 1,450	기업 450 800(900 적용 령우 다음한 공제액 공년지원) 지방 950	(단위 : 만원 중견 (3년지원) 450 800	O(500*) 에 적용 인) 대기업 (2년지원) -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청년 •추가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등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시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볼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중소(2 수도권 850 1,450	기업 450 800(900 적용 령우 다음한 공제액 당년지원) 지방 950 1,550	(단위 : 만원 중견 (3년지원) 450 800	0(500*) 세 적용]) 대기업 (2년지원) - 400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청년 •추가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톡 선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중소(E 수도권 850 1,450	기업 450 800(900 적용 령우 다음한 공제액 당년지원) 지방 950 1,550	(단위 : 만원 중견 (3년지원) 450 800	O(500*) 세 적용 I) 대기업 (2년지원) - 400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청년 •추가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 선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 구 분 정규직 전환자(1년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중소(수도권 850 1,450	기업 450 800(900 적용 령우 다음한 공제액 당년지원) 지방 950 1,550	(단위 : 만원 중견 (3년지원) 450 800	O(500*) 세 적용 I) 대기업 (2년지원) - 400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2 * 중 •기본 청년: •추가 * 전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공제 : 고용증가인원자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톡 선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구 분 정규직 전환자(1년 육아휴직 복귀자(1년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주소(2 주소(3 수도권 850 1,450 중소 1,300	기업 450 800(900 건용 병우 다음 당년지원) 지방 950 1,550	(단위: 만원 중건 (3년지원) 450 800 취: 만원) 중 90	O(500*) 에 적용 I) 대기업 (2년지원) - 400			
세액공제(법 \$ 29의7)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 2: * 중 •기본· 청년· •추가 * 조	지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구 분 상시근로자 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22년 고용증가분에 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사 공제 : 고용증가인원시인당 구 상시근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 :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 선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 구 분 정규직 전환자(1년	아래 금액	지방 770 1,200(1,30 한해 () 금 소하지 아니	주소(2 수도권 850 1,450 중소 1,300 합고용서	기업 450 800(900 건용 병우 다음 당년지원) 지방 950 1,550	(단위: 만원 중건 (3년지원) 450 800 취: 만원) 중 90	O(500*) 에 적용 I) 대기업 (2년지원) - 400			

	 직전 신고: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세무대리인 대행: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 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
⑩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의22)	·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후 3년간 10%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 공제(법 \$122의4)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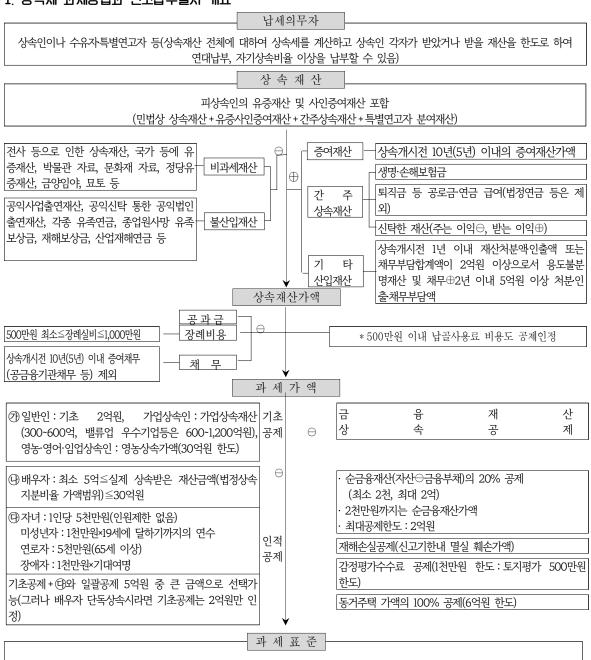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 창업후 3년 이내 2027. 12. 31까지 벤처기업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일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후 5년동안 소득없는 경우 5년)와 그 후 4년간 50%(청년 등 100%) 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100% 추가감면 신성장서비스업종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 면(법 §7)	제조업·건설업·축산업·선박관리업·광고업·무역전시 업·기술계학원·지식재산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 임업 등 영위하는 중소기업 과세	
③ 기술취득금액 과세 혜택(법 §12)	 특허권 등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취득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취득금액의 10% 감면(중견·대기업은 5%) *소득세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
④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 업[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수×1천만원과 투자누계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법 \$16의3)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이 연 후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취득주식 증여 및 1년내 처분시 근로소득 및 기 타소득 과세	·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법 §18)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등에 의하여 외국인기 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	최초 근로 제공일(2028. 12. 31 이전분까지)부터 10년간 50% 세액감면
⑦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 \$18의2)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과세(비과세·공제·감 면 규정 적용 안됨)2028. 12. 31까지
8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법 \$18의3)	연구기술개발 관련 우수인력이 연구기관 등에 취업 하여 받는 근로소득 감면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⑨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20)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

⑩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	100% 면제
자소득면제(법 §21)	자 등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군복무시	취업후 근로소득세 3년간 70%(90%) 감면
득세 감면(법 § 30)	최고 35세까지),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력단절	
.,,,,,,,,,,,,,,,,,,,,,,,,,,,,,,,,,,,,,,	여성 포함	○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014. 1. 1~2026. 12. 31
	70	까지 취업시
⑩ 주스기어가이 토하(비	법§6, §64 규정의 중소기업이 감면기간내 통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14)	시 감면 승계	(50%) 감면적용
③ 법인전환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타사업(영 §29①) 영위	
(법 §32④)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	(50%) 적용
	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④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영위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전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법 §33)	환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1년내 대체 취득	과세(개인이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 50% 감
		면, 토지는 차후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함)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내국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따라 완	주식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주식처분시까
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 과세이연함.
(법 §38)		
	수도권(4등급 지역)에 3년 이상 계속사업영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6년간 법인세 전
		액 면제(수도권외 광역시 등 이전시 4년), 그 다
(법 \$63의2)		음 3년은 50% 감면(수도권외 광역시 등 이전시
(日 800-72)		
61 7-1-1 A)7 141(v)	전 및 2028. 12. 31까지 신축개업	2년)
		입주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64)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또는 개발촉진지구	50% 감면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영위하는	
	내국인 등	
⑧ 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감면
(법 §66)	인(2026. 12. 31 이전 종료과세연도까지 적용)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1,200만원×조합원수×사
		업연도 월수/12」범위내 법인세 면제
		·농작물 생산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
		- '- '- '- '- '- '- '- '- '- '- '- '- '-
[]) 영어조합법인	수산업법상의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연도소득	
(법 §67)	(2026. 12. 31 이전 종료과세연도까지 적용)	1,200년전수도립전구~(시립전도 월구/12) 범위내 법인세 100% 감면
(月 201)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2026. 12.	垳/川/ (건걸노 1,200년전 '이야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② 농업회사법인	농업·농촌기본법상의 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법 §68)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는 설립일 이후 최초 소득
	세연도까지 적용)	발생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
		○농작물 생산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
		자시 이월과세적용
		∘감면신청요
② 조합법인 등 법인세	조합법인 등의 2025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당기순이익-(기부금 + 접대비·손금불산입액)]×9%
과세특례(법 §72)		(과세표준 20억원 초과시 12%)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임자리 제공하여 사	○발생소득 2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후 2년
行在元/行行/X/에 Ut OF	1외적 목적을 수구하면서 멋업활동하는 사이전 기	가 5()% 감박([얼워+쇠알계속 작시그로사스
	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간 50% 감면(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2000만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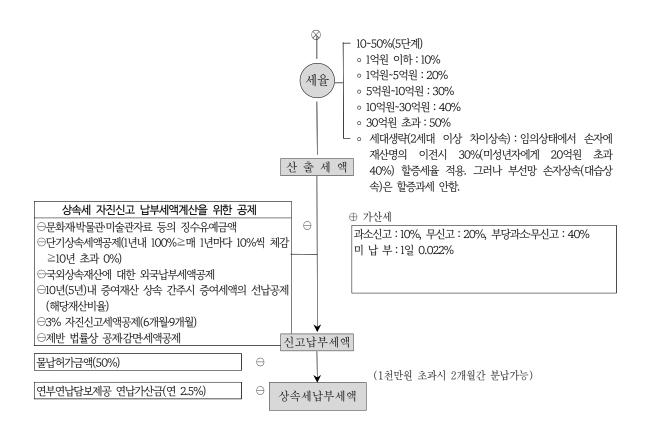
연 조스기어 고자 이저에 대	2년 이사 계소 고자시서의 가츠그 여이하던	o 법인 :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한 과세특례		o 검단· 영도자식을 3년 기자 3년 눈을 먹습산합 o 거주자: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간 분할납부
선 위제국대 (법 \$ 85의8)	동교기급의 시청의전 뒤에 2023. IZ. 31기시 토지 및 건물 양도	이 기구시 · 정도시 학교 3인 기시 3인간 군필입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행으로 수용되어 사업시행자에게 2026. 12.	
한 과세특례	31까지 양도	군일 되세임·
선 와세락데 (법 \$ 85의9)	21/1/21 名工	
	내구이이 이대즈태우 2층 이사 이대하 경으	법인세 : 20%-30% 감면(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한 세액감면(법 \$96)		합인제 · 2076 3076 김인(군등등업대구역의 경구 50%~75%)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	00711070
대한 세액감면	I .	○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투자누계액 50%+상
(법 §99의9)	그로 사이지만 네 상태기대	시근로자 수×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	
인세 감면(법 §102)	[현급합계 기원 중요계획 또는 학자기술개합 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	
セ州 日已(日 \$102)	이 그에서 제도의 조금인 전급과 제공품조 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당해 법인이 조림	
	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	
◎ 구제히게기주 저요에 ml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2014.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 벼겨 처해 으예대사 하이에 이그부사이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금불산입	일시 환입분	○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 제출요
(법 §104의23)	일시 된 1년 	이 네근중앙급 학급물산합산장시 제물표
	구이에서 기계 이사 오여하 사어자의 구내리	이전일 이후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6년간 100% 감
대한 감면	국기에서 2년 약성 운영인 시합성을 국내오 이전창업신설하고 동일업종 영위	면
(법 §104의24)	시선생 비선 글이고 등 글 밥을 생겨 	긴
	제즈처다고하기수다지 이즈기어이 새무사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
	전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첨단기술	
감면		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법 \$121의8)	옷 삼년세품의 원인한 자급해서 글 6월 포크 	이 어음 조현에 종료 되게 한도 가입한지 : 50% 유현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	이에 대하 가며
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
감면		세 100% 감면
(법 §121의9)	,	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3121-13)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 H= \ = 0 & 1 -1 -	○ ①의 1/2를 각각 감면
② 기업도시개발 구열 등이	□ □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 구역, 지	
	I control of the cont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
인세 감면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	
(법 \$121의17)		이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日 8141-111)	│	
	(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역개발사업 구역, 시 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시행자의	
		°U러 1/2호 식식 심킨
③ 이시이무하주시 디지 트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	
자신등 시구 합구기합에 대한 법인세 감면		
		o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 §121의20)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	답인제·3U% 김번
에 비기즈기 드이 케그키지	서 발생하는 소득 그 및 Look 어느 비구즈 L 이그버이이 게그	. 人도세 표도 HOD 전에 대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재고	
판매이익의 과세특례	자산을 보세구역 및 물류시설에 보관후 양도	°번세신성쇼
(법 §14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1. 상속세 과세방법과 신고납부절차 개요



- 과세최저한은 50만원임.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 (국내소재 상속재산기액+10년(5년) 이내의 국내자산의 증여가액ー공과
 금,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채권, 5년~10년전까지의 증여채무, 국내사업장의 채무, 감정평가수수료)─기초공제, 금융자산공제 등



2. 증여의 유형·종류, 증여배제 및 증여시기 판단

증여 실질증여-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완전포괄주의), 증여계약, 민법상 증여, 재산무상이전, 본래적 증여, 작간접으 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 신탁이익권리, 보험금, 30% 이상 저가고가 양수도, 채무면제, 토지무상사용권리, 합병시 현저한 이익 이전, 증자감자시의 신주인수권과 주주간 이익이전,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가 와 전화가격차이,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과 관련된 이익이전, 금전무상처리 대부 및 가접지원, 기타 재산이전으로 간주되는 변칙증여 및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 재산분할―사회통념 이상의 위자료, 원초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후 재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증액 부분(당초 적법 분배후의 변경증가는 감소자로부터 증여임), 이혼시 재산분할은 자기재산반환으로 증여아님. -증여추정ㅡ직업, 성별,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 재산취득이 아닌 경우 취득자금원천이 입증되지 않는 금액 및 상화자금 증여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의 증여추정 -증여의제―특수관계인 지배결손법인에의 재산증여거래로 인한 이익변경액금융자산 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 _ 공익법인출연—자본금출자총액의 5%를 초과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기업지배목적 아니라면 제외),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외 사용 -증여배재제외(증여 아닌 경우)―과세가액불산입, 당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불균등 분배, 이혼시 상속세 배우자

2024·12·25 www.eAnSe.com **41**

의 증여의제에서 납세능력 상실한 경우, 소득세 과세가액 산입금액, 3개월내 증여의 반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금액, 사회통념 범위내의 위자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금액 어쩔수 없는 증여세 대납액, 지정기부금 간주액, 상속안수유자에 대한 증여재산, 저가고가 양수도:채무면제·증자감자 중여세는 중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하는데, 따라서 기한내 적법한 신고납부 (10% 세액공제) 및 기한후 가산세(10%~40%)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 분	재 산	증여시기·증여실행일
일 반	모든 재산	증여・수증재산의 현실적 취득일
재 산	토지·건물·부동산	등기일·등록일·소유권변경일·명의개서일(명의변경전의 증여아님)
종류별	신축건물 등	준공검사서의 준공일 가옥대장 등재일
0	등록동산(항공기·중기·자동차)	공부상 등가 등록일
	일반동산(물건·비품 등)	인도일 인도받은 날 점유일 지배일
	주식·유가증권	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배서일:교부일
	정기금보험금	각 취득일 보험사고발생일
증 여	신탁계약	신탁이익원본수익수취일
형태별	친인척양도·저가·고가양수도	양도시가・양수시기
0 "=	채무면제체무인수	면제이익수취의사표시일:채무의 실제인수일:승낙일:실제변제일
	합병증자감자 등	합병일주식배정일소각일

3.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과 증여공제 및 채무공제

- 중여세 ⊕ 증여재산가액 합계액(=민법상 증여(실질증여)+증여의제+증여추정)
- 과세 ⊕ 재차증여의 합계액(=동일인(부부는 하나로 봄)의 10년 이내 증여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합산)
- 표준 #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증여재산가액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 3천만원 공제한 금액)
 - 비과세면제자산(국가 등의 증여, 자경농민·자영어민·영농 1자녀 증여면제, 장애인이 보험금수취인인 경우, 우리사 주조합차익 등의 제외)
 - → 과세제외자산(공익사업출연재산, 사회공공부조, 국가기부재산, 기타 사회공익·공중목적출연, 정당증여재산)
 - 채무·부담액(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채무는 공제안함. 객관적 채무, 제3자의 부담채무 등은 인수증여재산에 포함된 경우 공제함)
 - ⊖ 증여인적공제(친족공제)한도: 10년간 합산분
 - 배우자 ⇒ 6억원(10년 단위)
 - 직계존비속(계부계모도 포함) ⇒ 5천만원 정액(부모합산)
 - 직계비속(미성년자) ⇒ 2천만원 정액(부모합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1천만원 정액
 - 아무관계없는 자인 경우⇒공제액 없음(사회통념상 50만원).
 - 혼인에 따른 증여 ⇒ 1억원
 -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4.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이의 환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소유권 환원 이유	구체적인 경우와 사례	당초 증여의 과세여부	환원증여·재증여의 과세여부
적법증여계약후	준다고 했다가 취소, 행위전 변심	증여세 배제	증여세 배제
소유권이전 미실행			
적법증여계약,	초단기(3개월내) 반환	"	"
소유권이전	단기(6개월내) 반환	증여세 과세	"
등기 등록 등	범죄, 부양의무 불이행, 배신	"	증여세 과세
실행후 환원	파산 및 재정곤란 환원	"	"
2%구 선전	거액이혼위자료 후 재결합	"	증여세 배제
	공제금액한도 이혼위자료 후 재결합	증여세 배제	"
	원인무효 재판결과(조세포탈목적)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
	적법 상속 불균등협의 분할후 변경조정 등기	증여세 배제	"
부적법증여계약,	원인무효 재판결과 환원(진실)	"	증여세 배제
소유권이전 실행후 환원	사기, 강박, 불법행위, 착오, 오류, 위조 등 상속	"	"
	시 무효의 협의분할반환		

·지방세법 개요·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득세	경자 또는 차 량 등 종류 변 경자 주식 또는 지 분취득하여 과	취득자 신고 가액 ○ 연부취득 시 실제 연부금액 ○ 법인은 장 부상 실제 취득가액	 상속취득: 농지 2.3%, 농지외 2.8% 증여·유증(무상취득): 3.5%,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취득: 2.3% 기타 취득: 농지 3%, 농지외 4% 유상취득(주택): 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1.01%-3%, 9 	 신고불성실 □ 20%(기한 후 신 고 시 50% 경감) 납부성실 □ 수 0.03% 2년내 신고 납부없이 막 20% 	일내 신고 납부 ○ 상속취득 □ ☆6월 이 내(외국 주 소 경우 9

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등 재산권 기타 록 리의 설정변 면 또는 소멸에 허 한 사항을 공 세 에 등기 또 등록을 받은 2 *택시 등록사	경 ·등기·등록당 관 시 가격 부 ·등기·등록당 는 시 가격이 사 시가표준액 이 미달시 면 시가표준액	부	○납부불성실□→늦은 일자수×0.03% ○부동산등기법상 60일내 미등기 면 과태료 납부 (세액의 5배까지	하기 전까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면허를 받거나 변경 하는 자	면허의 종류별로 과 세(면허내용의 면 적·인원·수량 등에 의해 구분)	구분 년 30년 이상 시	34,000원 18, 22,500원 12, 15,000원 9,	–	미납부시 면허취소 요구	
- 1	경륜장 등과 장외발 매소 사업자	승자투표권·승마투 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10%×투표권(표) 액면		0	o신고불성실応10% o 납부불성실応1일 0.03%	다음 달 10일까 지 신고납부
배	담배제조자, 수입판 매업자, 외국으로부 터 반입하는 자 등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	○흡연용 제조담배	배 1그램당 36원 2램당 103원 밹당 36원 당 1.256원 + 897원 낡 88원 討당 364원 1그램당 26원	<u>.</u>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지연 일자×0.03%	다음 달 20일까 지 신고납부
방 소 비						부가가치세법 준용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함(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민	개 시·군내에 주소 인 를 둔 개인 분	개인	이만원을 초과하지 않 율적 제한세율	낳는 범위내 지기	자체 자		 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 납기< 값기 31
	업 업장을 둔 개 소 인과 법인 분 o 매년 7.1 현재		 사업주가 개인인 시 사업주가 법인인 시출자금액과 종업원을 원 *조례 의해 50% 능 사업소 연면적 lm²함) ※330m²이하 면서)업소: 자본금약 수에 따라 5만원 5 범위내 가감2 당 ≤250원(조리	백 또는 。 원~20만 조정 가		∘ 과세기준일⇨
	종 종업원에게 급여 업 를 지급하는 사 원 업주 분		종업원 급여총액×0.5 정함. (종업원 50명 이하인	5% 이내에서		›신고불성실가신 세 : 세액의 20% ›남부불성실가신 세 : 1일 0.03%	10일

세 목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지 방	소 시·군내에서 소 소득세액, 법인 득 득세, 법인세의 세액 분 납세의무가 있는 자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0.6%-4.5%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0.6%-4.5%, 4%, 7%, 3%, 1% 등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소득세액의 10%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2.2% 	신고·납부불 성실가산세 ◦소득세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 신고납부⊏> 익월 10일(분기
산	산의 소유자로 등재 (토지 및 건축 되어 있는 자(건물 물:70%, 주 및 구축물임) 택:60%)	1. 토 지(법 \$!!!①!)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0.2%에서 1 억원 초과 0.5% 적용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에서 10억원 초과 0.4% 적용 ③ 분리과세대상: 전·답 및 임야 ○ 0.7%골프장 등 ○ 4%, 기타 ○ 0.2% 2. 건축물(법 \$!!!①2) ①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②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0.5% ③ 기타 ○ 0.25% 3. 주 택(법 \$!!!①3) ① 별장 등 ○ 4% ② 기타 ○ 6,000만원 이하 0.1%에서 3억원 초과 0.4% 적용 4. 선 박(법 \$!!1①4) ○고급선박 ○ 5% ○ 기타 ○ 0.3% 5. 항공기(법 \$!!1①5) ○ 0.3% 6.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1.25%(최초 5년간) 7.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 0.15%(0.23% 한도) * 조례에 의해 50% 범위내 가감조정 可	○지방자치단체 의 부과고지 방법	매년 6월 1일 ∘납 기
동	유 o매매 등으로 (배기량×요율) 분 승계취득한 자 주 비영업용승용차 교통세액×세율	*세액 2,000원 미만은 부징수	행시 등록증 회수, 등록번호 표 영치 ○신고불성실다	• 1기분다 6. 16~ 6. 30 • 2기분다 12. 16~ 12. 30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가 산 세	신고 및 납부
역 자	직접수력발전(양수발 전 제외)하는 자 •지하수: 지하수이용 위해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 직접 제품 을 생산하는 채광자					◦신고불성실다 20% ◦납부불성실다 연일자×0.03%	조례에 의함.
	○특정부동산 소유자	①소방시설 요하는 고 건축물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체차 적용한합계액) ②화재위험건축물의가액 ③대형화재위험건축물의가액(마트, 백화점, 복합상영관등) ④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 공시설에 요하는 토지·건축물의가액 *조례의해 50% 7	이하 2,6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위 소방시설 /	2,400원+600 10,00 5,900원 초과금액의 13,700원 초과금액의 24,100원 초과금액의 세율의 100분의	의 300		
방 교 육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 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담 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취득물건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취득세 <u>율</u> -2%)% %(인구 50만)%(2015. 12. : 5 3.99%	이상시는 25% 31까지 연장)	6)	◦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지 연일자×0.03%	부시 함께 신



종합부동산세율

구 분	주 택		토 지			
세 율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농특 세	3억원 이하	0.5%	과 세 표 준	세 율		
20% 부담)	3억원 초과 6억억원 이하	0.7%	15억원 이하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000분의 2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45억원 초과	1,000분의 3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별도합산과세대상》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과 세 표 준	세 율		
	법인	2.7%	200억원 이하	1,000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000분의 6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장기5	<u>-</u> 유세액 공제>	400억원 초과	1,000분의 7		
	보유기간	영세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고령	자세액 공제>				
	연 령	공 제 율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70세 이상	100분의 40				
	. , 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13일 (금)	12월 16일 (월)	12월 17일 (화)	12월 18일 (수)	12월 19일 (목)
	달		러 (USD)	1431.50	1432.70	1434.90	1436.60	1436.80
일	본		엔 (JPY)	938.04	933.20	930.51	935.74	928.92
영	국 파	운	⊑ (GBP)	1814.43	1808.57	1819.96	1826.06	1806.99
캐	나 다	달	러 (CAD)	1006.68	1007.14	1007.58	1003.74	995.05
홍	콩	달	러 (HKD)	184.11	184.25	184.57	184.89	184.88
위	안		화 (CNH)	197.17	196.79	197.18	196.98	197.18
유	로		화 (EUR)	1498.71	1505.12	1508.15	1507.35	1488.31
호	주	달	러 (AUD)	911.65	912.13	914.32	910.23	893.69
싱	가 폴	달	러 (SGD)	1062.57	1062.24	1063.01	1064.23	1054.1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2.63	321.96	322.27	321.64	321.43